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53호 2020. 9. 24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례

-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(예천군 조례 제2408호)
-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(예천군 조례 제2409호)
-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예천군 조례 제2410호)

규 칙

-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(예천군 규칙 제1283호)

고 시

- 독양2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0-75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9월 24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408호

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예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계정구분)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(이하 “융자금”이라 한다)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

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성된 재정안정화계정 총액이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0%를 초과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예천군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3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4. 대규모 투자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천군 통합재정안정
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
③ 조성된 기금에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
준 기금적립금 총액 중 5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제3호에 따라
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통합기금을 「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
한 규칙」에 따른 예천군금고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
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자) 군수는 국·공채 이자율 수준,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
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수금·용자금에
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
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
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
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
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
4.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
5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는 「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계공무원)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기획감사실장

2. 기금출납원 : 예산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.”를 “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② 「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.”를 “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거나 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③ 「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”를 “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거나 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

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④ 「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.”를 “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 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⑤ 「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.”를 “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 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⑥ 「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기금은 예천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, 관리한다.”를 “기금은 예천군 금고,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⑦ 「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”를 “기금이자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, 기타 수입으로 한다.”로 하고 “세출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.”를 “세출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⑧ 「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.”를 “보조금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,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,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.”로 한다.

⑨ 「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“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,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”를 “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,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”로 하고 “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.”를 “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,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, 기타 경비의 지출로 한다.”로 한다.

⑩ 「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세입은 기채자금, 보조금, 상환금, 이자, 타회계의 전입금 및 이자 수입으로 하며, 세출은 제2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용자금, 보조금,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.”를 “세입은 기채자금, 보조금, 상환금, 이자, 타회계의 전입금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, 기타 수입으로 하며, 세출은 제2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용자금, 보조금, 기반조성비 및 부대경비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⑪ 「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, 기타수입으로 한다.”를 “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, 기타수입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.”를 “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⑫ 「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다음 호 “6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”을 추가한다.

제3조 중 다음 호 “10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”으로 한다.

⑬ 「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·운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다음 호 “4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”을 추가한다.

제10조 중 다음 호 “5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”을 추가한다.

⑭ 「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, 사용료(징수교부금 포함)부담금, 폐천부지매각수입허가수수료, 사업수입과보조금, 기타수입금(「하천법」, 「공유수면매립법」 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)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(하천공사 및 유지보수, 하천편입토지보상, 하천조사설계용역,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)를 세출로 한다.”를 “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, 사용료(징수교부금 포함)부담금, 폐천부지매각수입허가수수료, 사업수입과보조금, 기타수입금

(「하천법」, 「공유수면매립법」 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)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(하천공사 및 유지보수, 하천편입토지보상, 하천조사설계용역,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)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세출로 한다.”로 한다.

◇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설치 목적(제1조)

나. 기금의 계정구분 및 용도(제2조 ~ 제4조)

- 통합계정 : 타 회계·기금 간 예수 및 예탁 용도 활용
- 재정안정화계정 :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재원으로 세입예산 감소, 재난 및 재해 복구비,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등에 활용

다. 기금의 관리 및 운용(제5조)

- 예천군 금고 별도 계좌 예치·관리하며 기금운용계획에 의거

라. 기금의 이자 및 운용심의(제6조 ~ 제7조)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수 및 예탁 이자율 정함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사항
 -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
 -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 -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수 및 예탁에 관한 사항

마. 회계공무원 지정(제8조)

- 기금운용관 : 기획감사실장
- 기금출납원 : 예산팀장

바. 기금의 존속기한 및 시행규칙(제9조 ~ 제10조)

- 기금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9월 24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409호

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

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은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「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단장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

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 2. 모집·배치팀
 3. 활동관리팀
 4. 활동지원팀
 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-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의 설치)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-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「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-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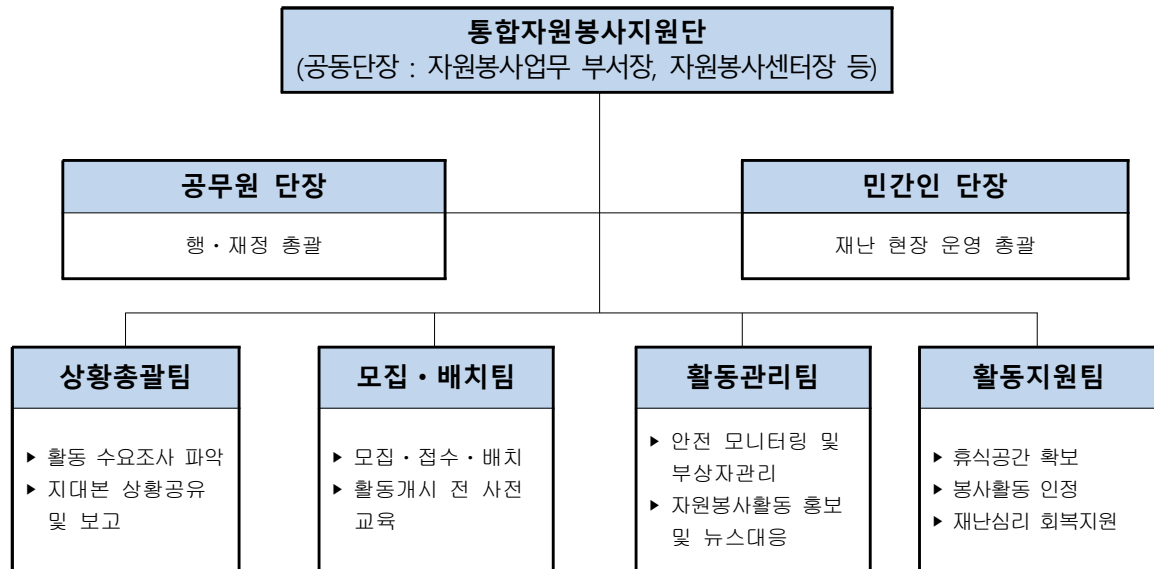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2]

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< 직무분담표 >		
팀명	직위	담당 사무
단장	공무원 (예천군 자원봉사 업무부서장)	▶ 지원단 구성·운영 총괄
	민간인 (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)	
상황총괄팀	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	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
	예천군 자원봉사 업무부서 팀장	▶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▶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·보고 등) ▶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▶ 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
모집·배치팀	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팀장	▶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총괄
	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지원
활동관리팀	예천군 자원봉사 업무부서 팀원	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
	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·장비 소요 파악
활동지원팀	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▶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▶ 봉사활동 인정(시간 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)

비 고

-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

◇제정이유

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지원·조정하기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되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·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제정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규정(제1조 ~ 제2조)
- 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(제3조 ~ 제4조)
- 다.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규정(제5조 ~ 제6조)
- 라.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(제7조)
- 마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(제8조)
- 바.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(제9조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9월 24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410호

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호 중 “가입”을 “가입 및 건강검진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·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임무수행 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-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증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 확대(제6조)
 - 건강 검진비 지원 추가(임기 중)

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9월 24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규칙 제1283호

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관(이하 “기금운용관”이라 한다)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, 통합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

②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예천군 금고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

제3조(예탁 및 통지) ①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할

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수금의 이자)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,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.

제5조(융자절차 및 융자약정)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는 기관(이하 “융자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고 융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융자기간)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정하되, 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융자금의 이자계산)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

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

-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고, 이자의 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한다.

제8조(융자금의 상환) ① 융자금 원금과 이자(이하 “융자원리금”이라 한다)의 상환방법은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.

- 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.

- ③ 군수는 통합기금을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일까지로 한다.

- ④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⑤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, 이자,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된다.

제9조(운용사항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예탁요구서

금 액 : 금 원 (금 원)

상기 금액을 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요구합니다.

이
이
이

예탁요구자 : (인)

예탁금증서

금 액 : 금 원 (금 원)

상기 금액을 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이
의
주
제

예탁자 : (인)

수탁자 :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(인)

예 천 군 수 (인)
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

신청부서	(회계 및 기금명)
사업명	
사업개요	
신청금액	
융자금 상환계획	
위와 같이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융자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: 인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관 귀하	
첨부서류	사업계획서 1부
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 약정서

○○○○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금(이하 “용자금”이라 한다)을 용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관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용자신청 부서의 장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 간에 용자약정을 체결하고,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.

제1조(용자조건) “을”이 인수할 용자금의 용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용자연월일 : 년 월 일
2. 용자목적 :
3. 용자금액 : 금 원정(₩)
4. 용자조건
 - 이 자 율 : 연 %
 - 상환기간 :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

제2조(상환방법) ① 용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년 월 일까지 이를 년 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월 일에 상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도의 상환일로 한다.

② 용자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용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,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완료한다.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.

③ 용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월 일부터 해당연도 월 일까지의 용자금에 대한 이자 : 월 일
2. 해당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용자금에 대한 이자 : 월 일

④ 용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하여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.

⑤ “을”이 제1항,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일에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할

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⑥ “을”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, 이자,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.

제3조(자금의 용도) “을”은 용자금을 제1조제2호의 용자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“갑”은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제4조(상환의무) “을”은 용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료제출 및 준수의무) ① “을”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“갑”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무관련 서류
2. 사업계획 진행 상황
3. 용자금 운용 상황
4. 그 밖에 “갑”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

②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용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약정의 수정) 이 약정은 “갑”과 “을”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.

제7조(해석)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효력발생과 종료) 이 약정서의 효력은 용자일로부터 발생하며 “을”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.

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갑 : ①

을 : ②
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

(음자부서 : _____, 회계(기금)명: _____)

○ 음자현황 (단위 : 원)

사 업 명	용 자 년월일	용 자 조 건		총 계			비 고
		거치/상환	이율(%)	계	원 금	이 자	

○ 상환계획 및 실적 (단위 : 원)

[illegible]

■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
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		
상 환 대 상 부 서 명		
융 자 금 수 령 액 (a)	금	원 (금 원)
융 자 금 기 상 환 액 (b)	금	원 (금 원)
융 자 금 상 환 잔 액 (c=a-b)	금	원 (금 원)
조 기 상 환 신 청 액 (d)	금	원 (금 원)
상 환 잔 액 (e=c-d)	금	원 (금 원)
조 기 상 환 신 청 이 유		
신청액 납부 희망일	년 월 일	
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: 인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관 귀하		

◇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제정하는 「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◇주요내용

가. 시행규칙의 목적(제1조)

나. 기금 관리 및 운용(제2조)

- 기금운용관은 장부를 비치하여 세입·세출 정리
-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은 예천군 금고 위탁

다. 예탁 통지 및 예수금 이자(제3조 ~ 제4조)

- 타 회계 예탁요구 시, 예탁요구서 징구 및 예탁증서 교부
- 예수금 이자는 기금 결산 후 연 1회 지급

라. 융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(제5조 ~ 제8조)

- 융자요구 기관은 융자신청서 작성·제출하며 상호간 융자약정 체결
- 융자기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
- 융자금 이자 계산과 산정 기준일
- 융자금 상환, 연체일 계산 및 상환 순서

마. 운용사항(제9조 ~ 제10조)

-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

고 시

예천군 고시 제 2020 - 75호

독양2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

독양2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5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09. 24.

예 천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독양2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2. 사업의 목적

- 독양2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 개선, 재해위험시설 정비, 주택개량 등을 통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함

3. 위 치 : 예천군 보문면 독양2리 일원

4. 사 업 비 : 2,026백만원(국비 1,506, 지방비 467, 자부담 53)

5. 주요 사업내용

- 노후주택정비 :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, 빈집정비, 노후주택수리
- 안전·위생확보 : 재래식화장실정비, 세천정비, 축대 및 옹벽정비 등
- 기초생활인프라 : 마을안길확·포장,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
- 주민공동시설 : 마을회관 리모델링, 지방상수도개설, 가로등설치 등
- 경관시설정비 : 담장정비, 쓰레기분리수거시설
- 주민역량강화 : 전문가 초청교육, 선진지 견학 등
- 휴 먼 케 어 : 찾아가는 의료서비스, 통증재활서비스 등

6. 사업시행자 : 예천군수(위·수탁 : 한국농어촌공사)

7. 사업시행기간 : 2019년 ~ 2022년(4년간)

8.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

연번	행정 구역		지 번	지목	면 적(㎡)		소 유 자	
					지 적	편 입	성 명	주 소
1	보문면	독양리	133-4	전	977	145	최금순	대구 북구 관음동 1313-11

9.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: 붙임 시행계획서와 같음(시행계획서 게재 생략)